

Investment Guide to Thailand

# 태국 투자가이드

**SHIN & YOO**

LEGAL ADVISORY  
РЕСУЛТ ВДАІІЗОРКА

Prepared and Presented by  
신진욱 변호사







## OVERVIEW

태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21년 1분기 기준 최대 외국인 투자국으로, 태국 외국인 투자 전체의 17% (3.14억 USD)를 차지하고 있다. 태국은 과거 국내에 관광지로 많이 알려져 있었으나, 현재는 한국의 전자상거래, 게임, 소프트웨어 및 기타 디지털 산업의 중요한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에서 21위를 차지할 정도로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태국은 시장 규모, 거시환경, 노동시장 효율성 측면에서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부패, 행정편의, 인프라를 반영한 종합기반시설 등에서는 아직 개선이 필요하여 상대적 열위에 있다. 종합적으로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보다는 시장규모 등을 고려할 때 투자환경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비스업 투자한도가 49%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태국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 반해, 낮은 법인세율(20%)과 부가세율(7%), 비교적 장기의 외국인투자 면세 인센티브 부여기간(8년)은 큰 장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 WAIVER

본 가이드에서는 태국시장 진출을 계획 중인 한국 투자자들을 위해 해외투자정책과 회사 설립, 계약 등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세부적인 사항이나 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은 별도로 확인할 것을 권고합니다.

최근 변경사항인 경우 본 가이드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태국 현지 법원의 해석은 이와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태국법상 회사의 종류

태국법상 회사는 크게 합자회사와 주식회사로 나뉘는데, 태국의 회사법을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률은 ① 민상법(Civil & Commercial Code), ② 주식회사법(Public Limited Company Act), ③ 외국인사업법(Foreign Business Act) 등이 있다. 태국은 우리와 달리 민법과 상법이 하나의 법으로 묶여져 있고, 합자회사(Partnership, 미등록합자회사, 등록합자회사, 유한합자회사)와 비공개주식회사(Limited Private Company) 등의 설립은 민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태국의 주식회사는 비공개주식회사(Private Limited Company)와 공개주식회사(Public Limited Company)로 구분되며, 비공개주식회사는 민상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반면, 공개주식회사는 주식회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공개주식회사는 태국 증권거래법(Securities and Exchange Act)에 의해 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데, 주식회사는 15명의 발기인이 필요하며, 이사회는 최소 5인의 이사를 두어야 하며, 이 중 절반은 태국인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고, 이사선임권이 있는 경우 투자금 통장 사본 요구 등 검증을 강화하고 있어, 외국인의 초기 진출시 합자회사 또는 비공개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호하고 있다. 비공개 주식회사의 경우 3인 이상의 발기인으로 충분하며, 이사 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최소자본금 규정이 없어 설립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다만, 고용허가증(Work Permit)의 발급을 위하여 외국인 1인당 자본금 200만 바트(약 7,100만 원) 이상의 출자, 태국인 4인 고용이 필요하다.

지사, 상사, 대표사무소를 포함한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외국인사업법에 의하여 규율되며, 외국인사업법에서 외국인의 영위 제한 업종 등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 태국의 공장법(Factory Act)을 확인해야 하는데, 공장 건설, 운영, 확장, 안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안보 등을 목적으로 정부기관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외국인 사업법에 따른 제한

기본적으로 서비스업종의 경우 외국인 보유지분은 최대 49%로 제한되나, 외국인 사업허가 또는 태국투자청 승인시 100% 외국법인 설립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외국인 사업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태국 상무부로부터 FBL(Foreign Business License)를 취득하거나 투자진흥기관으로부터 투자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 두가지이다. 투자확인서는 태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국가의 기업활동신청, 태국 투자청(BOI), 태국산업단지공사(IEAT), 동부경제회랑사무국(EECO) 등에서 받을 수 있다.





특히, 외국기업이 상품의 소매 또는 상품의 도매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외국 사업허가를 신청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외국 기업이 소매판매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100만 바트(약 3,600만 원) 그 이상의 (완납) 등록자본을 가지거나 각 소매 점포에 대한 자본이 2,000만 바트(약 7억 1,300만 원) 이상인 경우 외국사업면허 요건으로부터 면제가 가능하다. 도매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의 경우, 기업이 각각의 점포에 대하여 1억 바트(약 35억 6,800만 원) 또는 그 이상의 자본을 가지는 경우, 그 회사는 외국사업면허 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이에 반하여, 농산품, 금속, 기계, 교통장비, 의료장비, 자동차, 화학 등의 제조업과 물류, 유통, 글로벌비즈니스, 소프트웨어 개발 및 디지털 서비스 등의 서비스 분야 사업은 육성분야 사업으로 비교적 그 제한이 적습니다.

이 때문에, 태국 진출 전 반드시 영위 업종 등에 대한 제한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외국사업허가를 신청하여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 태국기업과의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계약서의 언어는 태국어, 영어로 작성하되, 분쟁시 권리보호를 위하여 각 언어로 작성된 하나의 중복 계약서를 사용하거나 번역 공증을 통하여 2개의 언어에 대한 각 계약서들을 남길 것을 권고하고 있다. 태국에서는 친필 서명을 원칙으로 하며, 법인 회사의 경우 스탬프를 같이 날인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와 달리 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 쌍방과 각 보증인 2인씩, 변호사 등 7명이 서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태국 내에서 통용되는 표준계약서라는 것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아, 합의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그에 대한 정보, 기간, 결제방법, 계약위반 및 파기에 관한 관련사항들을 세세히 기재할 것을 추천한다.





## 합작투자의 방식

외국인 투자자가 외국인 사업허가를 얻지 못했거나 투자청으로부터 투자촉진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합작투자 방식을 고려하게 된다. 합작투자 방식은 자본조달의 용이성과 현지기업의 네트워크 및 유통망을 활용할 수 있어 초기 투자에서 고려해 볼만한 방식이다. 태국에서의 합작투자는 태국의 합작파트너가 자본의 50% 이상을 보유해야 하므로, 통상의 경우 태국기업이 51%, 외국인투자자로서 국내기업이 49%를 보유하는 형태가 되며, 태국법상 태국 기업으로 간주되며, 외국인 사업법의 제한이나 혜택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태국법상 허용되는 모든 사업을 아무런 제약 없이 영위할 수 있고, 외국인 사업 허가 없이도 제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태국인 주주가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게 되므로, 기본적으로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회사의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기타 투자 인센티브

외국인 투자자들은 태국의 “공업단지 공사법”과 “석유법” 등에서 기타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태국 조세법 역시 특정사업에 대해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BOI의 투자진흥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BOI 장려기업들은 기계는 물론 원료 및 필수 물자에 대한 수입관세로부터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모든 수출상품은 원료 수피 및 가죽, 목재 및 통나무 등의 품목을 제외하고 수출관세가 면제된다. 일정 수입, 수출업자들에게 Gold Card를 부여하여 정규세관절차를 면제해주고, 즉석에서 세금 납부 및 환급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 노무관리상 유의사항

태국에서 특별히 고용절차는 없으나, 종업원 10인 이상의 사업소는 반드시 취업규칙, 종업원 명부, 임금대장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취업규칙은 태국어로 작성하여 게시한 후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변경시 7일 이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종업원 명부와 임금 대장은 2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검사관의 요구시 이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금고 또는 10,000 바트 (약 35만 6,000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간 외 수당은 50% 이상, 휴일 수당은 통상 임금의 100%을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휴일의 초과근무수당은 통상 임금의 3배를 지급해야 하나,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근로하는 권한을 가진 자, 경비, 근로시간이 부정확한 옥외 작업에는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체불하면 연 15%의 지연이자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근무일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사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90일간의 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일반직원과 동일한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1년 이상의 근무자에 대하여 6일 이상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나, 합의시 유급휴가는 다음 해로 이월이 가능하다. 병가는 1년에 30일 이내, 출산휴가는 90일이다.





## 태국 내 부동산 소유

외국인 투자자는 정부 인증 산업단지에 있지 않는 경우 태국의 토지를 소유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태국 국민이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기업은 법적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투자청에 의해 승인된 프로젝트에 관하여 그 예외가 인정되기도 하는데, 외국인이 주식의 50% 또는 그 이상을 소유하는 진흥기업은 OBOI(Office of the Board of Investment)에 토지소유권의 소유를 신청할 수 있고, 소유가 승인되면 토지국 또는 지방 당국자에게 이를 고지한다. 그 외에 석유채굴 허가권자는 활동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토지법의 개정에 따라 최소 4,000만 바트를 투자한 외국인 주거용으로 최대 1,600 평방미터의 토지를 내무부 허가에 따라 소유할 수 있으나, 이를 허가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알려져 있다. 반면, 건물 소유권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외국인은 토지를 임대하고 그 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며,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외국인은 건물 내 분양아파트의 권리를 보유할 수 있으나, 건물 내 전체 분양단위의 49% 이상을 소유할 수는 없다. 기업의 경우 태국 내 빌딩의 매수에서 이러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해당 은행은 자금이체를 거부하여 그 매수를 제한한다. 다만, 방콕 및 파타야에 있는 콘도미니엄 건물에는 그 예외가 허용된다.



2022 | January

SHIN & YOO Legal Advisory

**SHIN & YOO**  
LEGAL ADVISORY  
정법률법률

**신&유 법률사무소**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56길 9, 우리기술빌딩 11층

T. 02-6323-6220

F. 02-6323-6223

E. host@shinyoo. co. kr

W. www. shinyoo. co. kr

신진욱 대표변호사(jwshin@shinyoo. co. kr)